무배당 KB손보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보험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무배당 KB손보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보험 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약관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제도(이 약관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_____와 주식회사 KB손해보험(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05-030-40)(이 약관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보험계약(이 약관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용자"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 다.
 -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시행규칙(이 약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약관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6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7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수익자)

① 이 계약의 수익자(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한 때

- 에는 가입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또는 이 제도 가입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가입자 부 담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제5조 (부담금의 납입)

-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입합니다.
- ② 가입자는 제1항의 금전 이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 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⑤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 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합니다.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제7조 제2항에 의한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급여 및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양도, 압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약관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적립금의 운용)

- ①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용 포함),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합니다.

제8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가입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가입자에게 교부합니다.

제9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가입자가 청약한 경우 가입자에게 이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가입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물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개시 및 종료)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2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1)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이 약관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4조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해약환급금을 이전하는 경우 및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가입자가 회사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회사가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청구가 지연되어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⑥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정수할 수수료를 적립 금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⑦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제세금 징수절차 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⑧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보상합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펀드 의 선택 및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양도, 압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중도해지)

- ① 가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 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전 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4.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5.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6.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 7.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8. 가입자가 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
- 9. 상기 각호의 사유 이외에 전출입 등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10. 가입자가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용 포함) 또는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단위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일±7영업일 이내에 전부 회사의 자산관리계약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 11. 가입자가 이율보증형 5년 단위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일-6개월 이내에 전부 회사의 자산관리계약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 12. 가입자가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단위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7영업일 이내 또는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7영업일 이내에 전부 회사의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을 제외한 회사의 자산관리계약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⑥ 이 계약이 제4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 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7조 (계약이전)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펀드의 선택 및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18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8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적용)

-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

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 적립시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 장래 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금리연동형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회사채 수익률」,「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률×2 +지표금리×1)/3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0%인 경우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 하는 경우에도 적립금은 적용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제19조~제21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9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①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1년, 2년, 3년, 5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제20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

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 안 확정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국고채 수익률」,「회사채 수익률」,「지방채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A1 × 0.7 + A2 × 0.3 A1: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1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 2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A1 × 0.7 + A2 × 0.3 A1: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2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3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A1 × 0.7 + A2 × 0.3 A1: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3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 5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A1 × 0.7 + A2 × 0.3 A1: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지방채(5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제21조(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 ①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 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또는 펀드자동재배분 운용지시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 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기간 및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1. 이율보증형 1년

가. 경과기간 6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 나. 경과기간 6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90%

2. 이율보증형 2년

가.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

나. 경과기간 12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95%

3. 이율보증형 3년

가. 경과기간 18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

나. 경과기간 18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90%

4. 이율보증형 5년

가.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50%

나.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60%

다. 경과기간 36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70%

라. 경과기간 48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

마. 경과기간 48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90%

제22조~제24조는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에 관한 사항으로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2조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의 단위보험)

- ①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의 만기일은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하며, 연단위 이율변 동형 3년 적용이율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② 가입자는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합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가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제23조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의 적용)

①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회사가 정한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설정된 단위보험의 설정일로부터 최초 1년 동안은 단위보험 설정일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1차년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 동안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2차년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며,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 동안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 동안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 동안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3차년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합니다.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의 적용 예시>

20X1년 12월 31일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단위보험에 부담금 납입 후 3년 동안 적용되는 이율 은 경과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1차년, 2차년, 3차년) 적용이율]

20X1년 12월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 : 1차년 2.50%, 2차년 2.60%, 3차년 2.70%

20X2년 12월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 : 1차년 3.00%, 2차년 3.10%, 3차년 3.20%

20X3년 12월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 : 1차년 3.50%, 2차년 3.60%, 3차년 3.70%

[20X1년 12월 31일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단위보험에 부담금 납입 시 적용되는 이율]

경과기간	적용이율	비고	
20X1년 12월 31일~	2 500	20X1년 12월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20X2년 12월 30일	2.50%	1차년 적용이율	
20X2년 12월 31일~	3.10%	20X2년 12월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20X3년 12월 30일	3.10%	2차년 적용이율	
20X3년 12월 31일~	3.70%	20X3년 12월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20X4년 12월 30일	3.70%	3차년 적용이율	

② 제1항의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결정합니다.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1차년, 2차년, 3차년)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연단위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1차년, 2차년, 3차년)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국고채 수익률」,「회사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1차년, 2차년, 3차년)
- 지표금리(%) = A1 × 0.7 + A2 × 0.3 A1: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3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제24조(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상품의 해약환급금)

- ①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단위보험이 만기일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 로 해지되는 경우 또는 펀드자동재배분 운용지시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중도해지이율은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의 80%로 적용합니다.

제25조~제27조는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5조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의 단위보험)

- ①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의 보증기간(3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3 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화합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위보험이 실적배당형 운용방법(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포함된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단위보험 만기일에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은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의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로 합니다.

제26조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의 적용)

- ①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3년(디폴 트옵션용)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가 동안 확정 적용 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국고채 수익률」,「회사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용)

• 지표금리(%) = A1 × 0.7 + A2 × 0.3 A1: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3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제27조(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상품의 해약환급금)

- ①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6조 제4항에서 정 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또는 펀드자동재배분 운용지시에 따라 해지되 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기간 및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경과기간 18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 × 80%

2. 경과기간 18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용) 적용이율 × 90%

제28조~제35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8조 (실적배당형 용어의 정의)

- ①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②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③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 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④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 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⑤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29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MMF, 단기대출, 신탁업자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거래 등 단기금융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2.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5%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3.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4.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5.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6.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7.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8.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MMF, 단기대출, 신탁업자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거래 등 단기금융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② 제1항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합니다.

제30조 (펀드의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29조의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②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③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가입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
-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3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 ⑤ 회사는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적립금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가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 ⑥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사용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 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1조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가입자는 계약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 로 재배분됩니다.
- ③ 가입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제32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평가 및 운용)

- ① 실적배당형 펀드는 제29조에서 정한 펀드유형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시가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 ③ 실적배당형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및 운용합니다.
- ④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제34조의 특별계정 우용보수를 차감합니다.
- ⑤ 가입자는 제30조에 따라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시점의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때,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하고,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는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4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 ① 회사는 실적배당형 펀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1. 운영보수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합니다.

펀드유형	적립금 기준 수수료율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매일 0.000424658% (연 0.155%)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매일 0.000561644% (연 0.205%)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726027% (연 0.265%)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726027% (연 0.265%)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	매일 0.000726027% (연 0.265%)
이하)	메일 0.000720027% (현 0.203%)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726027% (연 0.265%)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739726% (연 0.270%)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매일 0.000863014% (연 0.315%)

2. 투자일임보수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 로 합니다.

펀드유형	적립금 기준 수수료율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매일 0.000328767% (연 0.120%)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매일 0.000410959% (연 0.150%)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575342% (연 0.210%)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575342% (연 0.210%)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	매일 0.000575342% (연 0.210%)		
ोठो)	메일 0.000373342% (한 0.210%)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575342% (연 0.210%)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684932% (연 0.250%)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매일 0.001054795% (연 0.385%)		

3. 수탁보수

펀드 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 니다.

펀드유형	적립금 기준 수수료율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	매일 0.000054795% (연 0.020%)
াক)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4. 사무관리보수

펀드 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 로 합니다.

펀드유형	적립금 기준 수수료율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	매일 0.000041096% (연 0.015%)
이하)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 5.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 보수 이외에도 해당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등)가 추 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비용을 포함하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 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5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4. 기타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 관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30조에 따른 펀드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펀드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지합니다.

제36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7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38조 (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사무처리
 -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 8. 제5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의 차이
 - 9. 제5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납입한 날이 납입하기로 정한 기일 초과
 -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9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 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인감신고)

-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2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43조 (분쟁의 조정)

이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 ⑥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가입자가 제2항의 계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할 경우에는 제21조, 제24조 및 제27조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5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에서 제공하는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용 포함) 및 연단위 이율변동형 3 년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실 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 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사용자 및 가입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2015년 11월 12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 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하며, 2015년 11월 13일 이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제 6 조,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16 조는 2022 년 4 월 14 일부터 적용합니다.
- ⑤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중 중소기업 감면제도 최초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 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증빙서류의 접수 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6호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중소기업으로 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취소 또는 종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종료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이후 도래하는 계산기 준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⑥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중 사회적기업 감면제도 최초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증빙서류의 접수 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단, 사회적기업으로 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취소 또는 종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① 제19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재예치합니다.

-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부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

(별지)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

_____(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KB손해보험(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05-030-40)(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____년 _월 _일 체결한 개 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보험약관(이 협정서에서 "약관"이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협정서에 의하여 약관 제12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매일 적립금에 해당 자산관리수수료율(일 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연단위로 합산하여 현금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월단위로 합산하여 매월 계산기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각합니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회사와 자산관리 보험계약과 자산관리 신탁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자산관리 보험계약과 자산관리 신탁계약 중 먼저 체결한 계약의 매 계약 응당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합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16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 일, 약관 제17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약관 제14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약관 제15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까지로 합니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구분

하여 매일 적립금에 해당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원리금보장형	0.000821918% (연 0.30%)		
실적배당형	0.000684932% (연 0.25%)		

5.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3차년도 이후	10%

- 6.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중소기업으로 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취소 또는 종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종료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이후 도래하는 계산기준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7.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9. 제1호 내지 제7호의 적립금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 제1호 내지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 된 적립금으로 합니다.
- 11. 제1호 내지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 운용방법별 적립금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수 료율을 적용합니다.
- 12. 다음 각 목의 기업은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율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인 연 0.14%를 적용합니다. 단, 다음 각 목의 기업으로 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취소 또는 종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

13. 자산관리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운용지시에 따릅니다.

제3조 (협정서의 작성・보관)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체결약		월	_일	
가 입 자	명	판		(인)
회 사	명	판		거래인감